

#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 제안이유

○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구체화 하고, 타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장학생의 자격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다른 장학금 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자 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방송통신대학이나 디지털 대학 등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적용된 기준임.
○ 장학금 제도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심사기준을 성적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객관적인 기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교나 2년제 대학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는데 애로가 있음.
○ 장학생 자격을 등록금 전액이상의 장학생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 다소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56호
의결 연월일	2006. 12. 21

제안년월일 : 2006년 12월 12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방송통신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함.

○ 장학생의 자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자만 제외하는 것은 너무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로 판단하여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

## 2.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규정함.(안 제2조 3호, 4호)

○ 장학생 자격을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함.(안 제3조 2항)

# 부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3호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초·중  
등교육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조 4호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학력이 인  
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를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52  
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를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  
는 대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 2항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전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  
외한다”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  
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상의 장학금  
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 신·구조문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2. 생략</p> <p>3.“<u>고등학교</u>”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u>고등학교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는 제외한다.</u></p> <p>4.“<u>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u>”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u>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u></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생략</p> <p>1. ~5. 생략</p> <p>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전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p> <p>1. ~2. 생략</p> <p>3.“<u>고등학교</u>”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u>고등학교를 말한다.</u></p> <p>4.“<u>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u>”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u>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말한다.</u></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생략</p> <p>1. ~5. 생략</p> <p>②----- ----- ----- <u>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u></p>

[수정안 포함]

##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를 “부천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중 “대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제외한다”를 “대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3.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추천)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장학금을”를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12조중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장학금지급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생략)</p> <p>3.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u>교육법 제107조의3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u>는 제외한다.</p> <p>4.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u>대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제외한다.</u></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u>장학금 신청(추천)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2.(현행과 같음)</p> <p>3.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u>고등학교를 말한다.</u></p> <p>4. ----- ----- ----- --<u>대학교를 말한다.</u></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u>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u>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현행	개정안
<p>1.~5.(생략)</p> <p>②제1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u>장학금을</u> 받는 자는 제외한다.</p> <p>제8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5.(생략)</p> <p>제10조(장학금의 사용기준)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u>각호의 1</u>에 사용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1.~5.(현행과 같음)</p> <p>②----<u>각 호의 어느 하나</u>----- ----- -----<u>부천시에서</u> <u>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u> -----</p> <p>제8조(장학생의 자격상실)----- -----<u>각 호의</u> <u>어느 하나</u> ----- -----.</p> <p>1.~5.(현행과 같음)</p> <p>제10조(장학금의 사용기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1.·2. (현행과 같음)</p>